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8. 10 선고 2021가단108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13.

판 결 선 고 2021. 8.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9.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81537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3. ‘C은 원고에게 6,895,285원 및 그 중 4,989,145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44628호 ‘12,390,428원 및 그 중 9,042,621원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6. 18. C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92094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0. ‘C은 원고에게 2,873,382원과 그 중 1,961,761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673219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0. ‘C은 원고에게 16,642,207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2,567,264원에 대하여는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D이 2019. 9.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자녀 E, C, F, G가 있는데, 2009. 9. 6. 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

2) 한편 C는 상속재산분할 당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3) 피고는 위 분할협의를 따라 2019.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200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 당시 C의 채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H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1.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한편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